

등록번호	교통행정과-14895
등록일자	2015.4.8.
결재일자	2015.4.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교통행정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최윤서	나정수	이준영	04/08 이명균
협 조			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용도 일제조사 추진계획



서 대 문 구
교통행정과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추진계획

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, 부과대상시설물의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I 교통유발부담금 개요

■ 근거법령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제29조
-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

■ 부과개요

- 부과시기 : 2015. 10월 정기분 부과 (납부기간 : 10. 16. ~ 10. 31.)
- 부과대상 :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
- 대상기간 : 2014. 8. 1. ~ 2015. 7. 31.(1년간)
- 부과대상자 : 2015. 7. 31. 현재 시설물 소유자

■ 부담금 산정기준

- 부담금 산정기준

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
-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('15년 10월 부과시부터 적용)
 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('14.1.14.)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('14.5.14.)에 따른 제도 변경

- '20년까지 최대 2,000원으로 단계적 인상

(단위 : 원)

< 기존 >

부과기준	'13년
3천㎡ 미만 또는 3천㎡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	350
3천㎡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	700

⇒

< 개정 >

부과기준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3천㎡ 이하	700	700	700	700	700	700	700
3천㎡ 초과 ~3만㎡ 이하	700	800	900	1,000	1,100	1,200	1,400
3만㎡ 초과	800	1,000	1,200	1,400	1,600	1,800	2,000

- '14년의 기준은 '14. 8. 1. ~ '15. 7. 31.까지를 의미함

- 건물 총 연면적이 3,000㎡ 미만인 시설물은 기존대로 350원 적용

○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

- 면적을 3천㎡ 이하, 3천㎡ 초과 ~ 3만㎡ 이하, 3만㎡ 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

적용 예시	기존	개정
면적 4만㎡ 적용시 ('14년 부담금 기준)	4만㎡x700원x교통유발계수	[(3만㎡x700원)+(1만㎡x800원)] x 교통유발계수
면적 4만㎡ 적용시 ('20년 부담금 기준)	4만㎡x700원x교통유발계수	[(3천㎡x700원)+(2만7천㎡x1,400원)+(1만㎡x2,000원)] x 교통유발계수

○ 교통유발계수 : 공장시설 0.47 ~ 백화점 10.92

-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센터 9.83에서 10.92로 상향

Ⅱ 시설물 조사

■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㎡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535개소
- 조사기간 : 2015. 5. 1. ~ 6. 30.
- 조사방법 : 시설물 현장방문 전수조사
- 조사인력 : 구청에서 채용한 시설물 조사원(기간제 근로자) 4명

■ 조사내용

-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건축물 멸실, 신·증축 여부 조사
 - 시설물 소유권 변동 및 건물 명칭 등 부과자료 변경사항
 - 부과대상 기간 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여부 조사
 - 실제 사용용도가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- ※ 조사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병행 실시

Ⅲ 조사원 채용

■ 채용예정

- 채용인원 : 4명
- 근무기간 : 2014. 5. 1 ~ 6. 30 (2개월)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(주 5일 근무)

IV 소요예산

■ 인건비(기간제근로자보수) : 12,035천원

○ 산출근거 : 57,859원 × 4명 × 26일 × 2월

■ 예산과목

○ 교통행정과 -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- 교통행정 관리 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
- 인건비 - 기간제근로자등보수

V 행정사항

■ 부과대상기간 중 멸실 또는 준공 처리된 건축물 자료 협조 : 건축과

■ 시설물 사용용도 조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